

대구지방법원 2016. 1. 29 선고 2015가단3533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6. 1. 22.

판결 선고 2016. 1. 2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북도 영덕군 C 575㎡ 중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상의 ㉠부분 지상 목조아스팔트 싱글지붕 단층(방갈로) 약 15.9㎡를 철거하고, 그 부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근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신중화

별지